

서울특별시강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강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박 검 수

2016년 5월 20일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바로 잡고,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함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4조 제2항에서는 ‘구청장이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’, 제3항에서는 ‘신청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준한다.’ 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법령 조문을 표시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(제4조)
- 나.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및 삭제함(제5조, 제9조)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조문을 정비함.
(제1조 외4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
- 1) 「사회복지 사업법」 제34조
- 2) 「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, 제21조의2
- 3) 「민법」 제750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6. 3.18. ~ 2016. 4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1188호

서울특별시강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강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강북구 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라”로, “기타 복지시설(이하”시설”이라 한다)”을 “그 밖의 복지시설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시설”을 “서울특별시 강북구립 사회복지시설과 그 밖의 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”로, “강북구청장(이하”구청장”을 “강북구청장(이하”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및 가사봉사”를 “및 가사 봉사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시설운영”을 “시설 운영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“관련사업”을 “관련 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“및 보호육성”을 “및 보호 육성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및 사업을”을 “및 사업에 대하여”로, “있다”를 “있으며,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,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선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설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.

제5조 전단 중 “국.공유재산”을 “공유재산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강북구”를 “서울특별시 강북구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관계공무원”을 “관계 공무원”으로, “장부 기타서류”를 “장부, 그 밖의 서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또는 검사결과”를 “또는 검사 결과”로, “관계규정”을 “관계 규정”으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로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